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 심의조직 변경(제3조제5항)

-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의2)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삭제(제9조)

마. 위촉위원 해촉규정 삭제(제9조의2)

바. 수당지급 대상 변경(제12조)

-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를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접경 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위하여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제출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 성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u> 」 제7조 의2에 따른 <u>정책자문위원회</u> (이하 “ <u>정책자문위원회</u> ”라 한다)--- ----- -----.		
<u>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u>		<u>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u>		
<u>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 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삭 제></u>		
1. <u>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 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 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 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 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u>				

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

<삭 제>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

<삭 제>

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각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행정

<삭 제>

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u>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제12조(수당) <u>위원회 및 협의회</u>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u>위원회</u>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u>협의회</u>----- ----- ----- -----. ----- ----- <u>협의회</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5 - 3511